



2023학년도
김포대학교
산업체
전문학사 학위과정
입학안내



● **직장인(산업체) 대학생 위탁교육 제도란?**

직장인(산업체) 대학생 위탁교육 제도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고졸이상의 직장인들에게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지속적인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사회적인 교육수요를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우수한 전문직업인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우리 대학 총장과 산업체 대표의 계약에 의한 무시험서류전형으로 전문대학에 입학한 후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정규 교육제도입니다.
 ※ 참고 : 1996년 개교 이후 현재 김포대학교 직장인(산업체)대학생 졸업자 2,000여명

● **직장인(산업체) 대학생 위탁교육 시행 법적 근거란?**

고등교육법 제40조(산업체위탁교육), 동법시행령 제53조의 2(산업체위탁교육), 부칙 제16조, 전문대학 산업체위탁교육 시행지침 (교육부 예규 제26호)등을 근거로 산업체위탁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전형일정

구분	원서접수	합격자발표	등록
1차모집	2022.11.30.(수) ~ 2023.01.18.(수)	2023.02.20.(월)	2023.02.20.(월) ~ 2023.02.23.(목)
2차모집	2023.02.06.(월) ~ 2023.02.09.(목)		

※ 2차 모집은 1차 모집의 결원이 있는 경우 시행하며, 대학 사정에 따라 모집하지 않을 수 있음

2. 원서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처: 김포대학교 입학홍보처(본관 1층 113호) 평일 09:00 ~ 17:00
 나. 온라인 교부: 김포대학교 홈페이지(<http://ukp.ac.kr>) - 입학안내 - 산업체위탁교육
 다. 우편 접수처: 우)10020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김포대학로 97 김포대학교 학생처
 라. 전형료: 무료

3. 모집학과 및 인원

학과명	학제	수업장소	모집인원
경찰행정과	2년	본교	40
레저스포츠과	2년	본교	20
무도경호과	2년	본교	25
부동산과	2년	본교	35
아동보육과	2년	본교	23
태권도융합과	2년	본교	20
호텔조리과	2년	본교	30
계			193

※ 등록인원 15명 미만 시 개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수업안내

구분	수업일자	시간	비고
산업체 (위탁교육)반	학기 중 월~금요일	18:00~20:15(22:55)내 편성	주3~5일
	학과별 평일 주간 및 토요일 수업 가능, 학과별 세부사항 별도 확인요망		
	3월~6월 1학기 / 하계방학 / 9월~12월 / 동계방학		

※ 2년 과정으로 소정의 이수학점을 학년 구분 없이 교육 받을 수 있습니다.

5. 지원자격

※ 모든 전형에 신체적, 정신적, 인종적 차별을 하지 않음. 상담 ☎ 031-999-4703~4707 김포대학교 학생처

학력기준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재직기준	1. 모집 당시 재직 중이어야 하며, 입학자격 최종 재확인 시점은 2023학년도 개시일 전일 (2023년 3월 1일)로 함 2. 입학시점(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산업체 재직경력이 9개월 이상 경력자로서 산업체에 재직 중인 자 ※재직 경력 9개월 :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 고용, 산재) 가입 경력을 합산 하여 9개월 이상일 경우 해당 3. 특성학교·마이스터고 졸업자, 일반고 졸업생 중 위탁직업교육과정 이수자, 초·중등교육법 제2조 5호 및 제60조에 의한 각종학교 중 고등학교 졸업 학력인정 전문계고 이수자(2023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는 재직경력 조건을 적용하지 않음 4. 1차 산업 종사자인 농·어업인 등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농지원부, 어업인 허가 증명서 등)에 등록된 주경영인, 주경영인의 배우자로서 주경영인과 함께 경영함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 농·어업인의 배우자도 위탁교육 가능 5. 4대 보험 미가입 영세 개인사업자는 위탁교육심의위원회에서 위탁교육 가능여부를 결정하되, 사업자 등록증명과 납세증명서 등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서류로 확인 6. 산업체와 계약체결 - 대학의 장은 사전에 산업체의 장과 계약을 체결 - 산업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에 등록된 단체(조합)에 구성원으로 가입되어 있을 경우, 그 단체(조합)의 장과 계약 체결가능

6. 전형방법

총장/산업체대표(2자 협약)의 위탁교육 계약에 의한 무시험 전형

7. 전형 우선순위

가. 동일 산업체에서 해당학과 지원자가 많은 경우
 나. 현(現) 재직 산업체 장기근속자(4대 보험 가입일자 등 공적 증빙서류 기준)

8. 산업체의 범위 (전문대학 산업체위탁교육 시행지침 교육부 예규 제29호)

-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 나. 방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국 및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신문사 등
- 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학교
- 라. 관할관청에 등록된 학원 및 교습소
- 마.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개인 병·의원 포함)
- 바. 직업군인
- 사.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5인(사업주 포함)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산업체
- 아.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산업체
- 자. 1차 산업 종사자인 농업인(영농인), 어업인과 경영을 함께 하는 배우자(원부 등재 자)
- 차. 업체가 구성원인 단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산업체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에 등록된 단체나 조합에 구성원으로 가입되어 있을 경우 그 단체나 조합 명의로 지원 가능. (예: 공인중개사사무소대표 - 대한공인중개사협회의 명의로 지원)
- 카. 기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타. 개인사업자로 납세사실 확인자

지원자 유의사항

- ① 입학 후 중도퇴직 시 제적처리함이 원칙이나 본인이 자발적으로 해당 산업체를 퇴직한 경우 제적처리하되, 퇴직 후 3개월 이내 이직한 경우에는 대학이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계약(협약)을 체결하여야만 제적처리 안함
- ②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 등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6개월 이내 에 타 산업체로 이직 시 대학교 내 「산업체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업유지 가능
- ③ 산업체 위탁교육을 한 학기만 남겨놓고 퇴직한 경우, 대학교 내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업유지 가능
- ④ 특성학교·마이스터고 졸업자, 일반고 졸업생 중 위탁직업교육과정 이수자, 초·중등교육법 제2조 5호 및 제60조에 의한 각종 학교 중·고등학교 졸업 학력인정 전문계고 이수자 (2023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는 산업체에서 6개월간 의무 재직 (2023년 9월 1일 이전 퇴직 시 제적 처리)
- ⑤ 매년 3월, 9월(연 2회) 재직관련 공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적처리
- ⑥ 2학기에는 전년도 원천징수 영수증 등도 제출받아 4대 보험 증명서와의 일치 여부 검증
- ⑦ 입학관련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학과 상관없이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함
- ⑧ 지정기한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추가연락 없이 불합격 처리하며 차 순위 지원자가 합격 처리됨
- ⑨ 고용형태에 따른 지원 불가 사유
 - 가족회사 취업 등의 사유로 고용,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 추후 재직경력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4대 보험 증명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 일용근로자 및 1개월 소정근로시작(60시간) 미만인 경우

9. 특전

- 가. 본 대학 정규과정과 동등한 자격 부여(전문학사학위 수여)
- 나. 졸업 후 편입 및 학과에 따라 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 입학 가능
- 다. 일반 학생 대비 전원 학비 30% 감면

10. 제출서류

가. 공동제출서류

제출서류	발행기관	비고
① 산업체위탁교육의뢰서 1부	우리대학 소정양식	회사 직인 날인
② 위탁교육계약서 2부	우리대학 소정양식	회사 직인 날인
③ 고등학교졸업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 사본 1부	초, 중, 고교발행 가능	
④ 재직증명서 1부(군인은 복무확인서)	위탁 산업체(회사)	

나. 추가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일반산업체(회사)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모두 표기)
공무원 및 군인	- 연금법 적용 확인서 1부(재직기간 포함)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과거이력 포함)
유치원, 사설학원 (개인 병·의원)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모두 표기)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 (협회)	- 단체(협회)의 관할관청 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 산업체의 단체(협회) 가입확인서 1부 - 갑종근로소득(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 확인서 1부 (최근 1개월 이상 분)
1차 산업 종사자 (영농인, 어업인 등)	- 농지원부 또는 어업인 허가증명서(국가, 지방자치단체 발급)
4대 보험 미 가입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납세증명서(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모든 지원자는 공통제출서류 + 추가제출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재직기간은 직장 4대 보험 가입일자로 인정함.

※ 제출서류 중 갑근세 관련서류 제출자는 증명하고자 하는 재직기간동안의 서류를 모두 발급 받아야 근무기간이 인정됨.

11. 유의사항

가. 원서 작성 시 작성자 날인 정정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나. 입학금 및 등록금은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액에 관한 규칙' 과 본 대학 '등록금 환불 지침' 에 따라 처리함
다. 재학 중 타 학과(전공)로 전과할 수 없고, 휴학 역시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재학 중 재직 등 자격이 유지 되어야 함
라. 재직 여부 확인

- 1) 매학기 시작 전월까지 위탁교육생들의 재직여부를 확인
 - 가) 재직확인 서류 제출(4대 보험 증명서)
 - 나) 신 입학의 경우 입학원서 접수 시 제출한 서류로 대체 가능
 - 다) 2학기에는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등도 제출받아 4대 보험 증명서와의 일치 여부를 검증
- 2) 용을 전제로 대학-산업체 간 협약하여 입학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일반고 졸업생 위탁직업교육과정 이수자 (2023년 2월 졸업 예정자 포함)는 산업체에서 6개월간(9월 1일) 의무 재직

마. 위탁교육생이 퇴직 시 제적처리가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 학업유지 가능

- 1) 적 퇴직 후 3개월 이내 이직하고 대학이 그 기간 내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계약(협약)을 체결한 경우
- 2) 비자발적 퇴직 후 6개월 이내 이직하고 대학이 그 기간 내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대학 내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 ※ 위의 3개월, 6개월 기준은 4대 보험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 서류 등 공적증명서상에 상실일과 취득일 기준으로 산정함.
- 3) 학기만 남겨놓고 퇴직 시 대학 내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12. 합격자 참고사항

가. 진행순서: 전형 일정에 따라 진행되며, 합격자 발표 후 등록금납부기한(2023.02.20.)에 학과별 등록인원 15명 미만인 학과는 개설이 안 될 수 있음

나. 교재구입: 오리엔테이션을 통하여 수강신청 및 교재구입을 안내하며 대학 내 서점에서 별도 구입

다. 수업시간: 월~금요일 18:00~20:15(22:55)내에서 편성. 단, 학과별로 주간 또는 토요일 수업이 있을 수 있음

라. 등록금액: 재학 중 8월과 2월, 연 2회 납부(입학금은 1학년 1학기 입학 시에만 납부함)

학과	입학금	수업료	학생회비	동문회비	계	
경찰행정과 부동산과, 아동보육과	일반학생	230,000	2,806,000	80,000	10,000	3,126,000
	산업체	230,000	1,964,200	80,000	10,000	2,284,200
태권도융합과, 무도경호과, 레저스포츠	일반학생	230,000	3,329,000	80,000	10,000	3,649,000
	산업체	230,000	2,330,300	80,000	10,000	2,650,300
호텔조리과	일반학생	230,000	3,404,000	80,000	10,000	3,724,000
	산업체	230,000	2,382,800	80,000	10,000	2,702,800

※ 일반학생 대비 수업료의 30% 감면 / 1학년 2학기부터는 수업료만 납부함

※ 학생회비 : 학생활동 및 학생행사 지원 (학생자치기구 관리)

※ 최종등록금은 위 금액에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13. 학과소개

학과	학과개요	취득자격증 및 취업처
경찰행정과	법학, 경찰학, 형사학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찰 법률사무 공무원, 장교 등 치안 및 법률 사무분야의 전문가 양성	경찰공무원, 법원직공무원, 교정직공무원
레저스포츠과	스포츠 모델, 필라테스, 요가, 춤바, PT 등 생활 스포츠에서 필요로 한 인재를 양성	피트니스 센터, 재활센터, 실버타운, 아동발달센터, 체육시설 공공기관, 유소년 스포츠센터,
무도경호과	생활스포츠 및 전문 스포츠 지도자 양성과 무도실습, 경호 실무를 연마함으로 실무중심 전문가 양성	경비지도사, 신변보호사, 방화관리사
부동산과	경제자유구역개발과 더불어 산업수요에 부응할 부동산 및 자산관리 분야의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 인재 양성	빌딩경영관리사, 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부동산자산관리사
아동보육과	아동보육의 전문이론습득 및 현장실무 교육을 통하여 보육교사로서 아동보육을 담당하는 전문가 양성	보육교사 2급(국가자격): 무시험 장애영유아 보육교사(국가자격): 무시험
태권도융합과	태권도융합과는 우리의 전통무도인 태권도 및 체력증진교육, 정신교육 및 인성교육 등을 통하여 체계적인 이론과 실기능력을 갖춘 우수한 태권도 지도자를 양성	체육계기관 코치 및 감독, 생활체육지도사, 태권도 지도사
호텔조리과	창의적이고 글로벌한 외식조리인력을 양성하여 조리 창업 및 글로벌 인재 양성	호텔, 학교(단체 급식소), 창업



산업체위탁교육 의뢰서

2023학년도

수험번호

S

지원학과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				
	학력	고등학교			년	월	졸업 (예정)		
		지역 검정고시			년	월	합격		
	주소								
	연락처	자택				휴대폰			
e-mail					비상연락				
재직사항	산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주소								
	대표자				직장연락처				
	업종				종업원 수				
	부서명	담당업무			직책(직급)				
산업체 경력	경력	산업체명	4대보험 가입일	4대보험 상실일	재직일수		비고		
	현직장				개월	일			
	전직장				개월	일			
	전직장				개월	일			
	계	4대 보험 가입된 재직 경력 합산: 총					개월	일	

※ 수험번호를 제외하고 모두 작성하여야 함

위 본인은 귀 대학 산업체위탁교육에 응시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하며 위 개인의 정보 및 SMS, e-mail을 활용 통계조사에 활용하는 것을 동의() , 미동의()합니다.

년 월 일

본 인: _____ (인)

원서접수 추천인: 소속

추천인:

연락처:

김포대학교 총장 귀하

환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관계:
------	------	-------	------	-----

※ 우리대학의 산업체 위탁교육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게 된 경로를 해당란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홈페이지 교직원추천 우리대학 졸업생, 학생추천 입시설명회 신문, 광고 현수막 기타 ()

※ 추가 서류는 교육신청서와 동일 규격으로 뒷면에 첨부함.

※ 합격자는 재직증명서와 추가제출서류를 2023.03.02. 기준으로 다시 제출하여야 함.

※ 뒷면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를 확인(서명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대입 원서접수 및 대입 전형과정에서 수집된 지원자의 개인정보는 아래와 같은 범위 내에서 처리되며 그 과정에서 대학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 기재된 수집 항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범위 내에서 처리됨.

개인정보 수집항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기타
이름, 주민등록번호(재외국민과 외국인전형의 경우 :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추가전화번호, 이메일, 환불계좌 정보(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이름), 모집단위(지방학과), 학교정보최종학력구분, 재학/출신 고교명, 고교 전화번호, 전형구분	대입 원서 접수 및 대입 전형	처리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함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대한 동의 및 안내〉

대입 원서 접수 및 대입 전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개인정보를 위탁하고 있으며, 위탁 계약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개인정보의 위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제42조의2)

수탁업체	개인정보 수집항목	위탁업무 내용	제공받는 자의 보유 · 이용기간	기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모집시기, 성명, 주민번호, 합격정보, 과목성적정보, 수험번호, 대학코드, 합격/예치금구분, 접수장소, 접수일자, 지원결과, 전형유형, 모집단위명, 모집차수, 계열코드, 출신고교코드, 졸업연도, 등록일자구분	학생기록부/검정고시대입전형자료 온라인추출, 수능성적온라인 추출, 지원방법위반 및 이중등록 조항 위반자 사전예방, 위반자에게 통보	처리목적 달성시까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 · 이용기간	기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지원자 출신 고등학교	학교알리미에 진학 통계 자료 제공	성명, 등록대학, 모집단위명	처리목적 달성시까지	

지원자(만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대입 원서 접수의 제한이 있을 수 있음.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 식별번호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대입 원서 접수 및 대입 전형을 위한 범위 내에서 처리 됨.

〈정보주체 외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감염예방법(제6조4항) 및 재난안전법(제74조3항),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1항3호)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 및 이용함.

〈대입 지원 위반 안내 확인〉

학년도와 학기가 동일한 2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한 자는 최종적으로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중등록 위반으로 모든 대학의 입학이 취소됨. 최종 등록마감 후, 모든 대학 지원자의 지원/합격/등록 자료를 전산 검색하여 “대입지원 위반자” 로 검출되면 대학 입학이 취소됨.

〈본인 확인 및 지원 자격, 전형일자 확인〉

이 원서는 지원자 본인만 작성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차후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학 입학 무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지원 대학의 모집요강을 확인하기 바람.

〈대입 허위지원 방지와 지원자격 조작 방지에 관한 확인〉

허위지원을 할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며 처벌받을 수 있으며 지원 자격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합격이 취소됨.

위 내용을 확인하십니까? 확인함

위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수험생 본인이 직접(동의함/동의하지 않음)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확인 : (서명)



위탁교육계약서

김포대학교(이하'대학교')와 ()회사(단체를 포함한다. 이하'산업체')는 고등교육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의 산업체위탁교육(또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약정한다.

제1조(목적) 산업체 직원의 교육을 김포대학교에 위탁함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는데 있다.

제2조(위탁의 과정과 분야별 인원)

- 위탁교육의 과정은 고등교육법상의 전문대학과정으로 한다.
- 위탁의 모집단위별 위탁생 수는 다음과 같다.

연도	학과	위탁생수	위탁교육장
2023학년도			본교

제3조(위탁생의 자격)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 재직경력 9개월 이상 경력자로 현재 근무 중인 자로 한다.

제4조(위탁생의 선발과 입학)

- 위탁교육 대상자는 재직 중인 산업체에서 추천한다.
- 대학교는 위탁생으로 추천된 자에 대하여 입학전형을 거쳐 입학을 허가한다.
- 위탁생의 추천 및 입학전형 등 입학허가의 기준과 절차는 산업체 또는 대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5조(교육과정의 편성)

- 본 계약에 의거 위탁생을 별도 학급으로 편성할 경우에는 대학교와 산업체가 공동으로 별도의 교육 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
- 별도 교육과정을 편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학교의 학칙에 따른다.

제6조(산업체의 시설사용) 위탁교육시행과 관련하여 산업체의 시설 사용에 합의가 있을 때에는 사용시설의 목록, 사용방법 등을 작성하고 이 약정의 별표로 첨부한다.

제7조(산업체 임직원의 교수요원 활동) 위탁 산업체의 임직원 중 교수자격을 있는 자에 대하여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겸임교수 또는 시간강사로 위촉(임명)할 수 있다.

제8조(교육비 및 등록)

- 위탁생의 교육비 납부액은 대학교의 학생 납입금 수준으로 하되, 산업체와 협의하여 하향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률을 명문화 할 수 있다.
- 기타 위탁생의 교육비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9조(위탁생의 신분) 본 약정에 의거 입학이 허가된 위탁생은 김포대학교의 학생 신분을 갖게 되며, 학칙의 적용을 받는다.

제10조(위탁생의 재직확인 및 제적 및 준수사항)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일반고 졸업생 중 위탁직업교육과정 이수자는 산업체에서 6개월간 의무 재직(2023.09.01. 이전 퇴직 시 제적 처리)
- 매학기 시작 전월까지(연 2회) 위탁교육생들의 재직여부를 4대 보험의 모두를 제출 받아 확인한다.
- 2학기에는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받아 4대 보험 증명서와의 일치 여부를 검증한다.
- 퇴직 시 제적처리함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 학업유지가 가능하다.
 - 가. 자발적 퇴직 후 3개월 이내 이직하고 대학이 그 기간 내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계약한 경우.
 - 나.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 등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6개월 내 타 산업체 이직 시 대학 내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업 유지 가능.
 - 다.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 등으로 비자발적 퇴직 시 산업체 위탁교육 1학기만 남겨놓고 퇴직하고 대학 내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학업 유지 가능.
- 위의 3개월, 6개월 기준은 4대 보험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 서류 등 공적증명서상의 상실일과 취득일 기간으로 산정.

제10조(대학교에 대한 산업체의 지원) 대학교에 대한 위탁 산업체의 특별한 지원 약정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별도로 정한다.

제11조(위탁교육협력위원회) 대학교는 위탁교육 운영에 대하여 위탁교육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의 기능 등 소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부 칙 본 계약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대학명: 김포대학교

총 장: 박진영



산업체명:

대표:

(직인)

위탁교육협약서

김포대학교(이하'대학교')와 ()회사(단체를 포함한다. 이하'산업체')는 고등교육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의 산업체위탁교육(또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협약한다.

제1조(목적) 산업체 직원의 교육을 김포대학교에 위탁함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는데 있다.

제2조(위탁의 과정과 분야별 인원)

- 위탁교육의 과정은 고등교육법상의 전문대학과정으로 한다.
- 위탁의 모집단위별 위탁생 수는 산업체위탁교육계약서에서 정한다.

제3조(위탁생의 자격)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일반고 졸업생 중 위탁직업교육과정 이수자(졸업예정자 포함) 대상 산업체의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대학에 위탁함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는데 있다.

제4조(위탁생의 선발과 학적)

- 위탁교육 대상자는 추천한 산업체에서 6개월 간 의무재직(2023.03.01.~2023.09.01.)을 해야 한다.
- 대학교는 위탁생으로 추천된 자에 대하여 입학전형을 거쳐 입학을 허가한다.
- 위탁생의 추천 및 입학전형 등 입학허가의 기준과 절차는 산업체 또는 대학교의 장이 정한다.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일반고 졸업생 중 위탁직업교육과정 이수자는 산업체에서 6개월간 의무 재직(2023.09.01. 이전 퇴직 시 제적 처리)
 - 퇴직 시 제적처리가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 학업유지가 가능하다.
 - 가. 자발적 퇴직 후 3개월 이내 이직하고 대학이 그 기간 내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계약한 경우.
 - 나.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 등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6개월 내 타 산업체 이직 시 대학 내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업 유지 가능.
 - 다.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 등으로 비자발적 퇴직 시 산업체 위탁교육 1학기만 남겨놓고 퇴직하고 대학 내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학업 유지 가능.

제5조(교육과정의 편성)

- 본 계약에 의거 위탁생을 별도 학급으로 편성할 경우에는 대학교와 산업체가 공동으로 별도의 교육 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
- 별도 교육과정을 편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학교의 학칙에 따른다.

제6조(산업체 임직원의 교수요원 활동) 위탁 산업체의 임직원 중 교수자격이 있는 자에 대하여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겸임교수 또는 시간강사로 위촉(임명)할 수 있다.

제7조(학사관리)

- 대학은 산업체위탁생들에 대한 내실 있는 교육 및 학사관리로 교육성과를 극대화 한다.
- 산업체는 위탁교육생이 대학의 학사일정을 준수하여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대학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여건을 보장하고 지속적으로 확인 감독 한다.

제8조(운영위원회)

- 협약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운영위원회는 본 협약서의 세부 이행과제 추진과 협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추가 사안 발생 시 논의하여 처리한다.
- 의결은 재직위원 과반수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협약의 유지 및 해지)

- 산업체-대학교간의 협약해지 통보가 없을 시 협약은 유지된다.
- 협약사항이 원만히 이행되지 않을 경우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면 협약은 해지 된다.

제10조(기타) 대학교와 산업체는 본 협약서의 보장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하여 보완사항을 협의한다.

부 칙 본 계약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대학명: 김포대학교

총 장: 박진영



산업체명:

(직인)

대표: